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4조 제7항 유보철회

"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."